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6.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5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5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 6.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 말까지 50% 감면(안 제2조)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 2014.12.31로 종료되어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 삭제(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사항 반영
 - 조문 제목의 ‘직접사용의 의미’ 를 ‘직접사용의 범위’ 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내용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12조)

○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인용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의 규정을 인용(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율을 현행조례에서는 종료기한 없이 100%로 하였던 것을 2018년까지만 일몰제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50%까지 축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료기한	경 감 율
2016.12.31.까지	75%
2017.1.1 ~ 2018.12.31	50%

※ 현재, 우리구에는 감면을 받고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음.

-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100분의 50)과 특 1·2등급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100분의 25)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2014.12.31.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기준의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객실요금 인하율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 하려는 것이며,
- 위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2014년도에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금액은 총5건에 69백만원 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상당액의 금액이 구수입으로 확보될 예정임.

- 최근 복지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 및 감면 종료 대상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5 호
----------	--------

제출연월일 : 2015.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 말까지 50% 감면(안 제2조)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14.12.31로 종료되어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 삭제(안 제10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사항 반영

- 조문제목의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 내용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12조)

다.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인용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인용(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4.9. ~ 2015.4.29.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을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서 “조례 중”을 “조례에서”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로,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을 “감면대상 업무”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 -----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p>
<p>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p> <p>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p>	<p>“삭제”</p>
<p>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 조례에서 -----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 감면대상 업무----- -----.</p>
<p>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3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p>